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‘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’을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0000호, 2026. 9. 00. 공포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소비자정책국 및 시장감시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,

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7명(7급 5명, 9급 2명),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9명(7급 6명, 8급 1명, 9급 2명)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9. 10. ~ 9. 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6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

제11조제9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,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항의 조사, 시정조치, 영업정지, 등록취소,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
4.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
8.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

제17조제3항 중 “105명”을 “112명”으로, “7급 2명)”을 “7급 7명, 9급 2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6명(6급 6명)”을 “15명(6급 6명, 7급 6명, 8급 1명, 9급 2명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소비자정책국) ① ~ ⑤ (생 략) ⑥ 특수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. 1. ~ 4. (생 략) 5. <u>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 · 시행</u> 6. ~ 10. (생 략) 11. <u>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 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 · 시행</u> 12. ~ 16. (생 략) 제11조(시장감시국) ① ~ ⑧ (생 략) ⑨ 특수거래감시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. <u><신 설></u>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소비자정책국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6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<u>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</u> 12. ~ 16.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시장감시국) ① ~ ⑧ (현 행과 같음) ⑨ ----- -----. 1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」 위반사항의 조사, 시정조 치, 영업정지, 등록취소, 과징 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. ·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 4. <u>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</u>

3. ~ 5. (생략)

<신설>

제17조(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

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(4급 1명, 4급 또는 5급 1명, 5급 1명),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또는 5급 1명),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6명(5급 6명), 전자적 증거의 수집·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9명(6급 13명, 7급 16명), 기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(9급 2명)과 그 밖의 정원 중 105명(3급 또는 4급 2명, 4급 2명, 5급 57명, 6급 42명, 7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비자 관련 법령 소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

분쟁조정에 관한 사항

5. ~ 7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

8.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

분쟁조정에 관한 사항

제17조(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112명-----

----- 7급 7명, 9급 2명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하는 7명(8급 7명),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(9급 1명)과 그 밖의 정원 중 <u>6명(6급 6명)</u>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<u>15명(6급 6명, 7급 6명, 8급 1명, 9급 2명)</u>----- --.
--	--